

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9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04조의16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·사산급여(이하 “출산전후급여등”이라 한다)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2월 21일

고 용 노동 부 장 관

##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

### I.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·하한액

#### 1.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

- ： 90일에 대하여 총 630만원,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
-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
  - ： 100일에 대하여 총 700만원,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,  
마지막 10일에 대하여 70만원
-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
  - ： 120일에 대하여 총 840만원,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

#### 2.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

- ：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,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
-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
  - ： 100일에 대하여 총 2,666,660원,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,  
마지막 10일에 대하여 266,660원
-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
  - ：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,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

- #### 3.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(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) 미만인 경우
- ： 일수로 계산한 금액

## Ⅱ. 행정사항

### 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2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